

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

의 안	
번 호	

제안연월일: 2002. 2.

제안자: 정치개혁특별위원장

1. 제안경위

가. 제226회국회(임시회) 제1차 위원회(2002. 1. 23)에서 법안심사소 위원회를구성함.

나. 제227회국회(임시회)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(2002. 2.25)는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민선 지방자치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단체장의 권한대행 사유를 확대하도록 함.

법률 제 호

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

地方自治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지사·부시장·부군수·부구청장(이하 이 조에서 “부단체장”이라 한다)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
1. 궐위된 경우
2.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
3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
4.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第101條의2(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權限代行등)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闕位 또는 公訴提起된후 拘禁狀態에 있거나 醫療法에 의한 醫療機關에 60日이상 계속 하여 入院한 경우에는 副知事· 副市長· 副郡守· 副區廳長(이하 이 條에서 “副團體長”이라 한다)이 그 權限을 대행한다.</p> <p>②· ③ (생략)</p>	<p>第101條의2(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權限代行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지사· 부시장· 부군수· 부구청장(이하 이 조에서 “부단체장”이라 한다)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권위된 경우 2.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4.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<p>②· ③ (현행과 같음)</p>